

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2015.04.02.에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8-31호(2018.05.0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-194호(2022.12.2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72호(2024.08.0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·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2월 27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-121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40.493.5㎡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오형진)
-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30, 301호
-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사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04.30.
- 아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25.02.27.
- 자. 변경사유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

차. 변경사항

-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
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	노량진동 227-121번지 일대	40,512.5	감) 19.0	40,493.5	

-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(변경)

명칭	면적(㎡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 후	
소계	8,971.7	-	8,971.7	
도로	5,554.7	-	5,554.7	
공원	1,508.0	감) 1,508.0	-	
공공공지	-	증) 1,508.0	1,508.0	
공공시설	1,909.0	-	1,909.0	

카. 기타 변경사항

- 사업비 변경
- 세입자 수 및 세입자 대책 내용 변경

타. 관계도서 :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(☎02-820-9267) 및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02-812-0890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